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356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3560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1279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김부권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한수

변론종결 2022. 11. 8.

판결선고 2023. 1. 10.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12795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4.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5.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이를” 앞에 “2017. 6. 22.경”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및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와 2017. 4. 1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7. 5. 2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각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7. 4.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2017. 5. 22.자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서울 소재 토지(상속재산 가액의 89%)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충주시 소재 토지(상속재산 가액의 11%)가 있었는데, F, 피고, G, C은 망 E의 사망일인 1994. 5. 10. 무렵 서울 소재 토지는 망 E의 배우자인 F가 우선 상속받되 추후 자녀들이 상의하여 적절히 분배하기로 하였고, 고향인 충주시 소재 토지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장남인 피고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와 같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94. 5. 10. 무렵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본안전 항변), 원고의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참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언제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9, 11, 13, 21, 23호증, 을 제2, 3, 21, 2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이루어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그 협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분할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와 G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2017. 4. 17. 작성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면서 2017. 5. 22. 작성된 이 사건 상속분할재협약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와 상속재산분할재협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로서 망 E의 상속인인 F, 피고, C, G의 인감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는 점, ③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1994. 5. 10.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하도록 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438호 규정에 따라 등기 신청 시 망 E의 사망일자인 1994. 5. 10.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의 경우는 등기원인일자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협의분할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은 ‘2017. 5. 22.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7. 5. 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피고의 동생인 H도 별지1, 2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0.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고, 2017. 4. 1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⑥ 망 E의 사망일인 1994. 5. 10. 무렵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⑦ 서울시 소재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1995. 4. 4.경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의 사망 무렵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면 그 무렵 혹은 서울시 소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일 무렵 상속등기를 하였을 법한데도 별다른 사정 없이 2017. 4.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 혹은 G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점, ⑧ G은 2017. 5. 2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2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을 제18, 19,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가 1981. 5월경 I와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인접한 J, K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2. 6.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가 1991. 7. 11. 분할 가능할 때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L으로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인접한 M 토지 중 1,202㎡(2017년경 분할되어 N가 되었다)를 매수하였고, 피고가 2017. 6.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5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E의 사망 이후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등 위 부동산들을 관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E의 사망일 무렵이나 2012. 6. 13. 이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또한 피고는, 별지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적어도 1998년 이후 피고에게 부과되고 이후 피고가 이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정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망 E의 상속인들은 1998년 이전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충주시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들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E의 사망 무렵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들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E의 사망 무렵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 G, C은 2017. 4. 17. F, G, C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2017. 5. 22. F, G, C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재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재협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23호증의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망 E의 사망일인 1994. 5. 10. 무렵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및 사후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후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 당시에

발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C의 D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실제로 연대보증일로부터 3개월 후의 변제기에 C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사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의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C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C이 2016. 11. 18. 원고에게 대여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6억원이지만 이중 4억원은 원고가 분양받은 양주시 O건물 P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C이 원고로부터 빌린 대여금은 2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구상금채권은 D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원고가 아닌 Q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이후 C은 2017. 10. 25. 원고에게 404,985,454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 2억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

② C은 2017. 2. 17. 위 2억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에게 모친인 F 소유로서 담보가치액 7억 2,200만원(시가 28억원 중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R 대 87㎡, S 대 67㎡, T 대 92㎡, U 대 108㎡, V 대 42㎡, W 대 45㎡(이하 'X동 6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는 등 채무액을 초과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으므로 C이 2017. 4월 내지 5월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우선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6. 22.경 C의 D에 대한 대여금채무 5억원을 Q 명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8, 29, 40, 41, 44,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8. Y 명의로 C과 연대채무자인 주식회사 Z 계좌로 6억원을 송금한 직후 위 회사가 'P호3) Y'라는 명의로 P호의 소유명의자인 주식회사 AA에게 4억원을 입금한 사실, C이 2017. 8. 11. 모친인 F 소유의 X동 6필지를 28억원에 매도한 후 2017. 10. 25. 그 잔금으로 받은 금원 중 404,985,454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11. 18. C에게 6억원을 대여하였고, C이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709,734,765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와 C이 2018. 5. 31.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및 구상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6. 11. 18. C에게 1,209,734,765원4) 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6. 1.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여 C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이 2018. 5. 31. 1,209,734,765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위와 같은 공정증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C의 사해행위 당시 위 금액 정도에 이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2. 17. 원고에게 X동 6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의 권유로 X동 6필지 위에 빌라사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17. 10. 25.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X동 6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합계 28억원 가량에 매도되었으나 원고는 C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X동 6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이 원고에게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여 원고의 채권액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 당시 원고는 적어도 C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X동 6필지에 관한 담보가치액 7억 2,200만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및 구상금에 관한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재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은 당초 C이 망 E로부터 상속받았던 재산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황기선, 판사 이상윤

별지1

목 록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585㎡
2. 충청북도 충주시		대 1041㎡
3. 충청북도 충주시		대 334㎡
4. 충청북도 충주시		전 808㎡
5. 충청북도 충주시		대 502㎡
6. 충청북도 충주시		대 390㎡
7. 충청북도 충주시		대 691㎡
8. 충청북도 충주시		대 321㎡
9. 충청북도 충주시		대 410㎡
10. 충청북도 충주시		대 493㎡
11. 충청북도 충주시		답 1177㎡
12. 충청북도 충주시		전 661㎡
13. 충청북도 충주시		답 671㎡
14. 충청북도 충주시		전 995㎡
15. 충청북도 충주시		전 5646㎡
16. 충청북도 충주시		전 4056㎡
17. 충청북도 충주시		전 3174㎡
18. 충청북도 충주시		전 1567㎡
19. 충청북도 충주시		전 612㎡
20. 충청북도 충주시		임야 24893㎡
21. 충청북도 충주시		임야 8628㎡.
22. 충청북도 충주시		임야 13785㎡

별지2

1. 충청북도 충주시 전 3571㎡
2. 충청북도 충주시 답 995㎡. 끝.

- 1)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2)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3) 주식회사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양주시 O건물 P호(철근콘크리트구조 56.1㎡)를 말한다.
- 4) 위 확약서상의 금액 709,734,765원에 구상금채권 5억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